|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실시방법**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156호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실시방법>이 2014년 4월 8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무회의 심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4년 4월 21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이하 '관리조례'로 약칭)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중요한 공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허가증 제도를 실행한다**.**  **제3조** 생산허가증 제도를 실행하는 공업제품 목록(이하 '목록'으로 약칭)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량감독총국'으로 약칭)이 국무원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하고 소비자협회, 관련제품 업계횝회 및 사회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회에 공표한다.  질량감독총국은 국무원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목록에 대한 평가, 조정, 단계별 축소 업무를 적시에 실시하고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회에 공표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경영활동에서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 어떤 조직과 개인도 생산허가증 없이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생산해서는 아니된다. 그 어떤 조직과 개인도 생산허가증 없이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경영활동에서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목록에 열거된 제품의 수출입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업무는 과학성, 공정성, 공개성, 투명성, 절차의 합법성, 대중의 편리성, 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6조** 질량감독총국이 전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생산허가증제도 적용대상 제품의 목록, 심사요구, 증서·표지, 감독·관리를 통일화 한다.  전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사무실이 전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의 일상업무를 책임진다.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본 행정구역 내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목록에 열거된 일부 제품의 생산허가증 심사·발급 업무를 담당한다.  성급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사무실은 본 행정구역 내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의 일상업무를 책임진다.  시, 현급 질량기술감독국은 본 행정구 역내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감독·검사 업무를 책임진다.  **제7조**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이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을 심사·발급하는 제품 목록은 질량감독총국이 확정 및 공표한다.  **제8조** 질량감독총국은 목록에 열거된 제품의 특성에 근거하여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실시세칙(이하 '실시세칙'으로 약칭)을 제정 및 발표하고 생산허가증 취득 요건을 규정하며, 목록에 열거된 제품에 대한 특수한 허가요건 설정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제정 및 발표한다.  **제9조** 질량감독총국 및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생산허가증 업무의 정보화 건설을 통일적으로 규획하여 생산허가 사항을 공표하고 대중의 조회와 기업의 허가증 신청에 편리를 제공하며 심사비준 업무를 점차적으로 온라인화 한다.  **제2장 신청 및 접수**  **제10조** 기업이 생산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영위하고자 하는 생산활동과 맞물리는 영업집조를 보유해야 한다.  (2) 기업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과 맞물리는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3) 기업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과 맞물리는 생산조건 및 검험·검역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4) 기업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과 맞물리는 기술서류와 공예서류를 보유해야 한다.  (5) 효율적인 품질관리제도 및 책임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6) 제품이 국가표준, 업계표준을 만족시키고 신체건강·안전 및 재산안전 보장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7) 국가 산업정책의 규정에 부합하고 국가에서 탈락과 투자건설 금지를 명문화 한 공예 낙후, 고 에너지 소모율, 환경 오염, 자원 낭비 등 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부합해야 한다.  **제11조** 기업이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 소재지의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에 생산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실시세칙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접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실시세칙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즉석에서 또는 신청 제출일로부터 5일 내에 보충이 필요한 사항을 기업에게 일괄 고지해야 한다.  **제13조** 성급 질량기술감독국 및 기타 그 어떤 부서도 임의의 별도 조건을 추가하여 기업의 생산허가증 신청과 취득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심사 및 결정**  **제14조** 기업에 대한 심사는 기업 생산현장 조사 및 제품 검사를 포함한다.  **제15조** 질량감독총국이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내에 모든 신청서류를 질량감독총국으로 이관해야 한다.  **제16조**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기업 생산현장 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5일전에 기업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질량감독총국이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업 생산현장 조사 계획을 기업에 통보하는 동시에 기업소재지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에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2-4명의 심사원으로 구성된 심사팀을 파견하여 기업 생산현장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동일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로만 심사팀을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업 소재지 성급 질량기술감독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시,현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수요에 따라 1명의 관찰원을 파견하여 기업 생산현장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8조** 심사팀은 실시세칙의 요구에 따라 기업 생산현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시간은 1-3일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팀은 기업 생산현장 조사결과에 대해 책임지며 팀장 책임제를 실행한다.  심사팀은 생산허가 신청 접수일로 부터 30일 내에 기업 생산현장 조사를 끝내야 한다.  **제19조**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생산허가 신청 접수일로 부터 30일 내에 기업 생산현장 조사 결론을 작성하여 조사대상 기업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질량감독총국이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업 생산현장 조사 결론을 기업에게 통보하는 동시에 기업 소재지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에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0조** 기업이 생산현장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제품 검사를 취소하고 기업심사업무를 중지한다.  **제21조** 기업이 생산현장 조사를 통과한 경우 실시세칙의 요구에 따라 샘플을 채취 및 봉인한 뒤 제품 검사를 신속히 진행한다. 심사팀은 해당 제품의 생산허가증 검사 수행 자격이 있는 검사기구 명단과 연락처를 기업에 제시하여 기업이 스스로 검사기구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검사용 샘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심사팀은 기업이 스스로 샘플을 채취하여 샘플 채취일로 부터 7일 내에 채취한 샘플을 검사기구에 제출할 것을 기업에게 통보해야 한다. 현장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팀은 기업이 스스로 검사기구를 선택하여 현장검사를 진행할 것을 기업에게 통보한다. 심사팀은 검사 소요기간을 기업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22조** 검사기구는 실시세칙에 규정된 기간내에 검사업무를 끝내고 검사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23조**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이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질량감독총국이 생산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의 경우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관련 자료를 질량감독총국에 이관해야 한다.  **제24조**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기업의 생산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생산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생산 허가를 결정한 경우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생산허가증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생산허가 신청 기각을 결정한 경우 기각결정을 서면으로 기업에게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5조** 질량감독총국,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해 생산허가증 취득 기업 명단을 사회에 공표하고 생산허가증 취득 기업 명단을 동급 발전개혁, 위생 및 공상 등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26조** 질량감독총국,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기업의 생산허가증 처리 자료를 적시에 정리·보관하여 대중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갱신 및 변경**  **제27조**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요효기간 만기 후에도 계속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은 생산허가증 만기 6개월 전에 기업소재지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에 갱신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질량감독총국,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이 방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업을 심사해야 한다. 기업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갱신을 허가하고 생산하가증 번호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다.  **제28조**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국가의 관련 법률·법규, 제품표준 및 기술요구의 변화함으로 인해 실시세칙이 개정된 경우 질량감독총국,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수요에 따라 필요한 현장 조사 및 제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기업의 생산조건, 검사수단, 생산기술 또는 공예에 변화(생산장소 이동, 생산라인 신축, 중대한 기술개량)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변화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기업 소지재의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질량감독총국,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이 방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업 생산현장 조사 및 제품 검사를 재실시 해야 한다.  **제30조**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기업의 명칭, 주소 또는 생산주소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업의 생산조건, 검사수단, 생산기술 또는 공예에 변화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은 변경일로 부터 1개월 내에 기업 소재지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의 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은 기존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31조** 기업은 생산허가증 증서를 신중하게 보관해야 한다. 생산허가증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업 소재지의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에 생산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질량감독총국,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기업에게 생산허가증을 재발급 해야 한다.  **제5장 중지 및 퇴출**  **제3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생산허가 절차의 중지를 결정해야 한다.  (1)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 거절하거나 심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기업이 생산허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  (3) 기업이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4) 기업이 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규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기업이 생산허가를 신청한 제품이 국가에서 규정한 탈락 또는 생산금지 제품 목록에 편입된 경우.  (6) 법에 따라 생산허가 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기타 경우.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이미 효력을 발생한 생산허가의 철회를 결정할 수 있다.  (1) 생산허가 실시 당시 근거한 법률, 법규, 규장이 개정되었거나 폐지된 경우.  (2) 생산허가 실시 당시 근거한 객관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경우.  (3) 법에 따라 생산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기타 경우.  생산허가 철회로 인해 기업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기업에게 보상해야 한다.  **제3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생산허가의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  (1) 기업이 사기, 뇌물수수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생산허가를 취득한 경우.  (2) 법에 따라 생산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기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생산허가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1) 생산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행한 경우.  (2) 생산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법이 정한 직권을 벗어난 경우.  (3) 생산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의생산을 허가한 경우.  (5) 법에 따라 생산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경우.  질량감독총국은 이해관계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거하여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이 내린 생산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허가 취소가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3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법에 따라 생산허가 말소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생산허가의 유효기간이 만기될 때 까지 생산허가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2) 기업이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3) 생산허가가 법에 따라 철회, 취소되었거나 생산허가증이 법에 따라 쉬초된 경우.  (4)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산허가 사항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5) 기업이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게 된 경우.  (6) 기업이 말소를 신청한 경우.  (7) 생산을 허가받은 제품이 국가의 탈락 또는 생산금지 제품 목록에 편입된 경우.  (8) 법에 따라 생산허가를 말소해야 하는 기타 경우.  **제6장 증서 및 표지**  **제36조** 생산허가증 증서는 정본과 부본으로 나뉘며 동등한 벌률효력을 갖는다.  **제37조** 생산허가증 증서에는 기업의 명칭, 주소, 생산주소, 제품명칭, 증서번호, 증서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38조** 생산허가증의 표지는 '기업제품생산허가'의 한어병음 Qiyechanpin Shengchanxuke의 약어인 'QS'와 '생산허가'의 중문글씨로 구성한다. 표지의 주요 색조는 남색으로 하고 'Q' 및 '생산허가'는 남색으로, 'S'는 백색으로 한다.  생산허가증의 표지는 기업이 스스로 인쇄(부착)하고 규정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가 가능하다.  **제39조** 생산허가증 번호는 한어병음 대문자 'XK'와 열자리 아랍숫자로 구성된다: XK××\_×××\_×××××.  'XK'는 허가를 대표하고, 앞 두자리 숫자(××)는 업종 번호를 대표하며, 중간 세자리 숫자(×××)는 제품 번호를 대표하고, 뒤의 다섯자리 숫자(×××××)는 기업의 생산허가증 번호를 대표한다.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이 발급한 생산허가증 증서는 번호 앞에 해당 성급 행정구역의 약칭을 달 수 있다.  **제40조** 기업은 제품 또는 포장, 설명서에 생산허가증 표지와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제품의 특성 상 표시하기가 어려운 무포장 제품의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위탁가공 방식으로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경우 기업은 제품 또는 그 포장, 설명서에 위탁기업의 명칭, 주소 및 가공을 위탁받은 기업의 명칭, 주소, 생산허가증 표지와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위탁가공하는 제품의 생산허가증을 보유한 경우 위탁기업의 생산허가증 표지와 번호도 표시해야 한다.  **제41조**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생산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품 또는 포장, 설명서에 생산허가증 표지와 번호를 표시하는 작업을 끝내야 한다.  **제42조** 그 어떤 조직과 개인도 생산허가증 증서, 생산허가증 표지 및 번호를 날조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어떤 조직과 개인도 타인의 생산허가증 증서, 생산허가증 표지 및 번호를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생산허가증 증서, 생산허가증 표지 및 번호를 임대, 대여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제7장 감독검사**  **제43조** 질량감독총국과 현급 이상 지방 질량기술감독국은 <관리조례>와 이 방법에 따라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조사원, 검사기구 및 검사기구의 검사원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44조** 현급이상 지방 질량기술감독국은 신고 또는 이미 입수된 불법혐의 증거에 근거하여 불법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처리하고 다음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경영활동에서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과 검사기구의 법정대표인, 주요책임자 및 기타 관계자에게 불법 혐의가 있는 활동의 관련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2)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경영활동에서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과 검사기구의 관련 계약,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자료를 조회, 복사할 수 있다.  (3)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경영활동에서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관리조례>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관련 제품을 차압, 압수할 수 있다.  **제45조** 기업은 생산허가 신청이 접수된 날로 부터 생산허가를 신청한 제품을 시범생산 할 수 있다.  기업이 시범생산한 제품은 출하검사에서 합격된 제품에 한해 제품 또는 그 포장, 설명서에 '시제품'임을 표시한 후에야 판매가 가능하다.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이 생산허가 처리 절차 중지 또는 생산허가 신청 기각을 결정한 경우 기업은 그 날부터 해당 제품 시범생산을 중지해야 한다.  **제46조** 생산허가를 취득한 기업은 제품 품질의 안정성과 품질 합격을 보증하고 규정된 생산허가 취득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제47조** 위탁가공의 방식으로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가공을 위탁받은 기업은 해당 위탁가공 제품의 생산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48조** 생산허가 취득일로 부터 기업은 연도 단위로 성급 질량기술감독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현급 질량기술감독국에 자기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생산허가를 취득한지 1년 미만인 기업은 다음 연도부터 자기검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기검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정된 생산허가 취득 요건 유지 상황.  (2) 기업의 명칭, 주소, 생산주소 등의 변화 상황.  (3) 기업의 생산 상황 및 제품 변화 상황.  (4) 생산허가증 증서, 생산허가증 표지 및 번호 사용 상황.  (5) 제품 품질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검사 상황.  (6) 기업이 설명해야 기타 상황.  **제8조 법률책임**  **제49조** 기업이 이 방법 제39조의 규정을 어기고 규정된 기한내에 변경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과 더불어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제50조** 기업이 이 방법 제40조의 규정을 어기고 규정된 요구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겨우 시정명령과 더불어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제51조** 기업이 이 방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타인의 생산허가증 증서, 생산허가증 표지 및 번호를 도용한 경우 시정명령과 더불어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2조** 기업이 이 방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출하검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품 또는 포장, 설명서에 '시제품'이 표시되지 않은 시범생산 제품을 판매한 경우 시정명령과 더불어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3조** 기업이 이 방법 제46조의 규정을 어기고 규정된 생산허가 취득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과 더불어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4조** 기업이 이 방법 제47조의 규정을 어기고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해당 생산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기업에게 위탁하여 가공한 경우 시정명령과 더불어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5조** 기업이 이 방법 제48조의 규정을 어기고 성급 질량기술감독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 현급 질량기술감독국에 자기검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과 더불어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9장 부칙**  **제56조** 자영업자가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경영활동에서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 생산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조사원,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 및 검사기구에 대한 관리와 생산허가증 증서의 양식은 질량감독총국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58조** 이 방벙에 규정된 기한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법정 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9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질량감독총국이 책임진다.  **제60조** 이 방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질량감독총국이 2005년 9월 15일에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실시방법>, 2006년 12월 21일에 공표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말소 절차 관리규정> 및 2010년 4월 21일에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실시방법> 개정에 관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결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  | **中华人民共和国**  **工业产品生产许可证**  **管理条例实施办法**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第156号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实施办法》已经2014年4月8日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4年8月1日起施行。  局 长  2014年4月21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和《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以下简称《管理条例》）等法律、行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国家对生产重要工业产品的企业实行生产许可证制度。  **第三条** 实行生产许可证制度的工业产品目录（以下简称目录）由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以下简称质检总局）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并征求消费者协会和相关产品行业协会以及社会公众的意见，报国务院批准后向社会公布。  质检总局会同国务院有关部门适时对目录进行评价、调整和逐步缩减，按前款规定征求意见后，报国务院批准后向社会公布。  **第四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生产、销售或者在经营活动中使用列入目录产品的，应当遵守本办法。  任何单位和个人未取得生产许可证不得生产列入目录产品。任何单位和个人不得销售或者在经营活动中使用未取得生产许可证的列入目录产品。  列入目录产品的进出口管理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执行。  **第五条** 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应当遵循科学公正、公开透明、程序合法、便民高效的原则。  **第六条** 质检总局负责全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统一管理工作，对实行生产许可证制度管理的产品，统一产品目录，统一审查要求，统一证书标志，统一监督管理。  全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办公室负责全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的日常工作。  省级质量技术监督局负责本行政区域内工业产品生产许可证监督管理工作，承担部分列入目录产品的生产许可证审查发证工作。  省级工业产品生产许可证办公室负责本行政区域内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的日常工作。  市、县级质量技术监督局负责本行政区域内生产许可证监督检查工作。  **第七条** 质检总局统一确定并发布由省级质量技术监督局负责审查发证的产品目录。  **第八条** 质检总局根据列入目录产品的不同特性，制定并发布产品生产许可证实施细则（以下简称实施细则），规定取得生产许可的具体要求；需要对列入目录产品生产许可的具体要求作特殊规定的，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并发布。  **第九条** 质检总局和省级质量技术监督局统一规划生产许可证工作的信息化建设，公布生产许可事项，方便公众查阅和企业申请办证，逐步实现网上审批。  **第二章 申请与受理**  **第十条** 企业取得生产许可证，应当符合下列条件：  （一）有与拟从事的生产活动相适应的营业执照；  （二）有与所生产产品相适应的专业技术人员；  （三）有与所生产产品相适应的生产条件和检验检疫手段；  （四）有与所生产产品相适应的技术文件和工艺文件；  （五）有健全有效的质量管理制度和责任制度；  （六）产品符合有关国家标准、行业标准以及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要求；  （七）符合国家产业政策的规定，不存在国家明令淘汰和禁止投资建设的落后工艺、高耗能、污染环境、浪费资源的情况。  法律、行政法规有其他规定的，还应当符合其规定。  **第十一条** 企业生产列入目录产品，应当向企业所在地省级质量技术监督局提出申请。  **第十二条** 申请材料符合实施细则要求的，省级质量技术监督局应当作出受理决定。  申请材料不符合实施细则要求的，省级质量技术监督局应当当场或者自收到申请之日起5日内一次性告知企业需要补正的全部内容。逾期不告知的，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即为受理。  **第十三条** 省级质量技术监督局以及其他任何部门不得另行附加任何条件，限制企业申请取得生产许可证。  **第三章 审查与决定**  **第十四条** 对企业的审查包括对企业的实地核查和对产品的检验。  **第十五条** 质检总局组织审查的，省级质量技术监督局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5日内将全部申请材料报送质检总局。  **第十六条** 质检总局或者省级质量技术监督局应当制定企业实地核查计划，提前5日通知企业。  质检总局组织审查的，还应当同时将企业实地核查计划书面告知企业所在地省级质量技术监督局。  **第十七条** 对企业进行实地核查，质检总局或者省级质量技术监督局应当指派2至4名核查人员组成审查组。审查组成员不得全部来自同一单位。  实地核查工作中，企业所在地省级质量技术监督局或者其委托的市县级质量技术监督局根据需要可以派1名观察员。  **第十八条** 审查组应当按照实施细则要求，对企业进行实地核查，核查时间一般为1至3天。审查组对企业实地核查结果负责，并实行组长负责制。  审查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0日内完成对企业的实地核查。  **第十九条** 质检总局或者省级质量技术监督局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0日内将实地核查结论书面告知被核查企业。  质检总局组织审查的，还应当将实地核查结论书面告知企业所在地省级质量技术监督局。  **第二十条** 企业实地核查不合格的，不再进行产品检验，企业审查工作终止。  **第二十一条** 企业实地核查合格的，应当按照实施细则要求封存样品，并及时进行产品检验。审查组应当告知企业所有承担该产品生产许可证检验任务的检验机构名单及联系方式，由企业自主选择。  需要送样检验的，审查组应当告知企业自封存样品之日起7日内将该样品送达检验机构；需要现场检验的，由审查组通知企业自主选择的检验机构进行现场检验。审查组应当将检验所需时间告知企业。  **第二十二条** 检验机构应当在实施细则规定时间内完成检验工作，出具检验报告。  **第二十三条** 省级质量技术监督局组织审查但应当由质检总局作出是否准予生产许可决定的，省级质量技术监督局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0日内将相关材料报送质检总局。  **第二十四条** 质检总局或者省级质量技术监督局应当自受理企业申请之日起60日内作出是否准予生产许可决定。作出准予生产许可决定的，质检总局或者省级质量技术监督局应当自决定之日起10日内颁发生产许可证证书；作出不予生产许可决定的，应当书面告知企业，并说明理由。  **第二十五条** 质检总局、省级质量技术监督局应当以网络、报刊等方式向社会公布获证企业名单，并通报同级发展改革、卫生和工商等部门。  **第二十六条** 质检总局、省级质量技术监督局应当将企业办理生产许可证的有关资料及时归档，以便公众查阅。  **第四章 延续与变更**  **第二十七条** 生产许可证有效期为5年。有效期届满，企业需要继续生产的，应当在生产许可证期满6个月前向企业所在地省级质量技术监督局提出延续申请。  质检总局、省级质量技术监督局应当依照本办法规定的程序对企业进行审查。符合条件的，准予延续，但生产许可证编号不变。  **第二十八条** 在生产许可证有效期内，因国家有关法律法规、产品标准及技术要求发生改变而修订实施细则的，质检总局、省级质量技术监督局可以根据需要组织必要的实地核查和产品检验。  **第二十九条** 在生产许可证有效期内，企业生产条件、检验手段、生产技术或者工艺发生变化（包括生产地址迁移、生产线新建或者重大技术改造）的，企业应当自变化事项发生后1个月内向企业所在地省级质量技术监督局提出申请。质检总局、省级质量技术监督局应当按照本办法规定的程序重新组织实地核查和产品检验。  **第三十条** 在生产许可证有效期内，企业名称、住所或者生产地址名称发生变化而企业生产条件、检验手段、生产技术或者工艺未发生变化的，企业应当自变化事项发生后1个月内向企业所在地省级质量技术监督局提出变更申请。变更后的生产许可证有效期不变。  **第三十一条** 企业应当妥善保管生产许可证证书。生产许可证证书遗失或者毁损的，应当向企业所在地省级质量技术监督局提出补领生产许可证申请。质检总局、省级质量技术监督局应当予以补发。  **第五章 终止与退出**  **第三十二条** 有下列情形之一的，质检总局或者省级质量技术监督局应当作出终止办理生产许可的决定：  （一）企业无正当理由拖延、拒绝或者不配合审查的；  （二）企业撤回生产许可申请的；  （三）企业依法终止的；  （四）依法需要缴纳费用，但企业未在规定期限内缴纳的；  （五）企业申请生产的产品列入国家淘汰或者禁止生产产品目录的；  （六）依法应当终止办理生产许可的其他情形。  **第三十三条** 有下列情形之一的，质检总局或者省级质量技术监督局可以作出撤回已生效生产许可的决定：  （一）生产许可依据的法律、法规、规章修改或者废止的；  （二）准予生产许可所依据的客观情况发生重大变化的；  （三）依法可以撤回生产许可的其他情形。  撤回生产许可给企业造成财产损失的，质检总局或者省级质量技术监督局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补偿。  **第三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质检总局或者省级质量技术监督局应当作出撤销生产许可的决定：  （一）企业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生产许可的；  （二）依法应当撤销生产许可的其他情形。  有下列情形之一的，质检总局或者省级质量技术监督局可以作出撤销生产许可的决定：  （一）滥用职权、玩忽职守作出准予生产许可决定的；  （二）超越法定职权作出准予生产许可决定的；  （三）违反法定程序作出准予生产许可决定的；  （四）对不具备申请资格或者不符合法定条件的企业准予生产许可的；  （五）依法可以撤销生产许可的其他情形。  质检总局根据利害关系人的请求或者依据职权，可以撤销省级质量技术监督局作出的生产许可决定。  依照本条第一款、第二款规定撤销生产许可，可能对公共利益造成重大损害的，不予撤销。  **第三十五条** 有下列情形之一的，质检总局或者省级质量技术监督局应当依法办理生产许可注销手续：  （一）生产许可有效期届满未延续的；  （二）企业依法终止的；  （三）生产许可被依法撤回、撤销，或者生产许可证被依法吊销的；  （四）因不可抗力导致生产许可事项无法实施的；  （五）企业不再从事列入目录产品的生产活动的；  （六）企业申请注销的；  （七）被许可生产的产品列入国家淘汰或者禁止生产产品目录的；  （八）依法应当注销生产许可的其他情形。  **第六章 证书与标志**  **第三十六条** 生产许可证证书分为正本和副本，具有同等法律效力。  **第三十七条** 生产许可证证书应当载明企业名称、住所、生产地址、产品名称、证书编号、发证日期、有效期。  **第三十八条** 生产许可证标志由“企业产品生产许可”汉语拼音Qiyechanpin Shengchanxuke的缩写“QS”和“生产许可”中文字样组成。标志主色调为蓝色，字母“Q”与“生产许可”四个中文字样为蓝色，字母“S”为白色。  生产许可证标志由企业自行印（贴）。可以按照规定放大或者缩小。  **第三十九条** 生产许可证编号采用大写汉语拼音“XK”加十位阿拉伯数字编码组成：XK××-×××-×××××。  其中，“XK”代表许可，前两位（××）代表行业编号，中间三位（×××）代表产品编号，后五位（×××××）代表企业生产许可证编号。  省级质量技术监督局颁发的生产许可证证书，可以在编号前加上相应省级行政区域简称。  **第四十条** 企业应当在产品或者其包装、说明书上标注生产许可证标志和编号。根据产品特点难以标注的裸装产品，可以不予标注。  采取委托方式加工生产列入目录产品的，企业应当在产品或者其包装、说明书上标注委托企业的名称、住所，以及被委托企业的名称、住所、生产许可证标志和编号。委托企业具有其委托加工的产品生产许可证的，还应当标注委托企业的生产许可证标志和编号。  **第四十一条** 取得生产许可证的企业应当自准予生产许可之日起6个月内完成在其产品或者包装、说明书上标注生产许可证标志和编号。  **第四十二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伪造、变造生产许可证证书、生产许可证标志和编号。  任何单位和个人不得冒用他人的生产许可证证书、生产许可证标志和编号。  取得生产许可证的企业不得出租、出借或者以其他形式转让生产许可证证书、生产许可证标志和编号。  **第七章 监督检查**  **第四十三条** 质检总局和县级以上地方质量技术监督局依照《管理条例》和本办法对生产列入目录产品的企业、核查人员、检验机构及其检验人员进行监督检查。  **第四十四条** 根据举报或者已经取得的违法嫌疑证据，县级以上地方质量技术监督局对涉嫌违法行为进行查处并可以行使下列职权：  （一）向有关生产、销售或者在经营活动中使用列入目录产品的企业和检验机构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和其他有关人员调查、了解与涉嫌违法活动有关的情况；  （二）查阅、复制有关生产、销售或者在经营活动中使用列入目录产品的企业和检验机构的有关合同、发票、账薄以及其他有关资料；  （三）对有证据表明属于违反《管理条例》生产、销售或者在经营活动中使用的列入目录产品予以查封或者扣押。  **第四十五条** 企业可以自受理申请之日起试生产申请取证产品。  企业试生产的产品应当经出厂检验合格，并在产品或者其包装、说明书上标明“试制品”后，方可销售。  质检总局或者省级质量技术监督局作出终止办理生产许可决定或者不予生产许可决定的，企业从即日起不得继续试生产该产品。  **第四十六条** 取得生产许可的企业应当保证产品质量稳定合格，并持续保持取得生产许可的规定条件。  **第四十七条** 采用委托加工方式生产列入目录产品的，被委托企业应当取得与委托加工产品相应的生产许可。  **第四十八条** 自取得生产许可之日起，企业应当按年度向省级质量技术监督局或者其委托的市县级质量技术监督局提交自查报告。获证未满一年的企业，可以于下一年度提交自查报告。  企业自查报告应当包括以下内容：  （一）取得生产许可规定条件的保持情况；  （二）企业名称、住所、生产地址等变化情况；  （三）企业生产状况及产品变化情况；  （四）生产许可证证书、生产许可证标志和编号使用情况；  （五）行政机关对产品质量的监督检查情况；  （六）企业应当说明的其他情况。  **第八章 法律责任**  **第四十九条** 违反本办法第三十条规定，企业未在规定期限内提出变更申请的，责令改正，处2万元以下罚款；构成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违法行为的，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实施行政处罚。  **第五十条** 违反本办法第四十条规定，企业未按照规定要求进行标注的，责令改正，处3万元以下罚款；构成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违法行为的，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实施行政处罚。  **第五十一条** 违反本办法第四十二条第二款规定，企业冒用他人的生产许可证证书、生产许可证标志和编号的，责令改正，处3万元以下罚款。  **第五十二条** 违反本办法第四十五条第二款规定，企业试生产的产品未经出厂检验合格或者未在产品或者包装、说明书标明“试制品”即销售的，责令改正，处3万元以下罚款。  **第五十三条** 违反本办法第四十六条规定，取得生产许可的企业未能持续保持取得生产许可的规定条件的，责令改正，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罚款。  **第五十四条** 违反本办法第四十七条规定，企业委托未取得与委托加工产品相应的生产许可的企业生产列入目录产品的，责令改正，处3万元以下罚款。  **第五十五条** 违反本办法第四十八条规定，企业未向省级质量技术监督局或者其委托的市县级质量技术监督局提交自查报告的，责令改正，处1万元以下罚款。  **第九章 附 则**  **第五十六条** 个体工商户生产、销售或者在经营活动中使用列入目录产品的，依照本办法规定执行。  **第五十七条** 生产许可实地核查及核查人员、发证检验及检验机构的管理，以及生产许可证证书格式，由质检总局另行规定。  **第五十八条** 本办法规定的期限以工作日计算，不含法定节假日。  **第五十九条** 本办法由质检总局负责解释。  **第六十条** 本办法自2014年8月1日起施行。质检总局2005年9月15日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实施办法》、2006年12月31日发布的《工业产品生产许可证注销程序管理规定》以及2010年4月21日发布的《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实施办法〉的决定》同时废止。 |